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5. 23(금) 10:0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불참위원 : 없음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3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과 <현안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순서로 세 번째로 잡혀 있는 <현안사항> 1건,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의, 최근의 KBS 사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준비도 <의결안건>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안사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안건보다도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토의하고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김 위원님께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때 저희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 안건이라는 것이 <의결안건>, <보고안건>,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타안건> 이렇게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재홍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이기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현안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의결사항>, <보고사항>, <현안사항>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제 생각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이 어느 안건은 더 중요하고 어느 안건은 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항>이 현재 KBS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보다 앞서 안건으로 제안되었던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심의하고 나서, 심의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런 긴급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건 제안순서로도 <현안사항>이 제일 마지막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현안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사항>이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미 다 논의했던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은 되도록 간략하게 처리하고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4-19-05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4개 사업자의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청 내용입니다. 먼저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이 동일방송구역인 대구시 중구/남구를 방송구역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케이블방송(주)을 합병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하우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해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주)티브로드 한빛방송이 대구시 달성구/달성군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티씨엔대구방송(주)을 합병하는 건입니다. 이 또한 합병목적이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주)씨제이헬로비전이 피합병법인인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동방송, 이 경우는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을 서비스 구역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며, 그다음에 (주)씨제이헬로비전 신라방송, 이 경우는 경북 경주시/영천시/경산시/청도군 그리고 (주)황성유선방송을 합병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합병 목적은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우는 (주)현대에이치씨엔 경북방송의 방송구역이 경북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인 (주)현대에이치씨엔 포항방송을 합병하는 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통합해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노하우와 인프라 공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검토 결과입니다. 이는 방송, 경영·회계, 시청자·경영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4개사는 경영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각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합병하는 것으로서 합병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송법령상 문제가 없으므로 변경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과 (주)현대에이치씨엔 경북방송은 각각 동일방송구역 내 사업자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채널 수가 하나로 줄어들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정보 전달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주)티브로드 한빛방송과 (주)씨제이헬로비전은 각각 전국 규모의 방송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를 합병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지역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채널 운영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편, 미래부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은 이용요금 체계가 다른 피합병법인의 기존 가입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주)현대에이치씨엔 경북방송은 피합병법인의 디지털전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변경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디지털전환계획을 충실히 이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사무국의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부의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4개사에 대한 법인합병 변경허가(안)에 동의를 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지역성과 다양성 보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부가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4개사에 대해서 지역채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관해서 우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정책국에서 마련한 보완조치라고 할까, 사전동의의 조건 같은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 간의 합병, M&A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동의하기 전에 대주주들 이동

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법인의 형식적 법적요건만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미디어 다양성과 또 방송채널의 지역성,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또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것이 지역성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방송이 대구에 있는 어떤 방송을 합병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시했고 그것을 잘 반영해서 이 정도면 사전동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게 보니까 대부분 이미 지분을 100% 내지는 98.88%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 1, 2년 전에 지분인수를 한 SO를 이번에는 합병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 기업의 M&A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지분인수를 해서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다가 그다음에 합병하는 것인데, 우리 방송법에 이것을 최다액출자자가 지분인수, 대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변경 승인을 과거에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승인을 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붙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허가 요청한 것 중에….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겸영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고 그에 따른 별도의 조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승인할 때 승인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승인조건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래부가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여부를, 의견을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부가 저희에게 동의여부를 요청해 왔는데 그러면 방통위는 어떤 측면에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래부와 방통위로 분리되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두 부처 간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디파인(define)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부와 똑같이 법에 나와 있는 심사기준을 볼 것이냐, 아니면 방통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방통위의 기능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 고유기능 중에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SO들도 온라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대로 이행하랴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법이 바뀌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이나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것은 과거에 체크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오늘 의견대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검토과정에서 프로세스상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차후에 논의여부를, 의견을 제시할 때 차후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렸다고 첫 번째 승인조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통위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고유업무에 맞는 관점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비효율성 문제나 중복규제 측면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없도록 저희들이 미래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3가지 점에, 첫째는 지배주주의 도덕성, 그동안 경영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약속사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의 다양성을 좀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부분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 부분에 관해서는 지상파방송 TV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케이블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에이치엔 같은 경우에 포항방송은 디지털 전환율이 불과 4.4%이고, 경북방송이 3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계획도 '14년에 35%, '15년에 46% 이렇게 5년간의 디지털 전환율의 계획표를 올려놓긴 했는데 과연 이 디지털 전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도 방통위 차원에서 꾸준히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제 경험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와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최초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또 변동이 생겨서 이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방통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미래 방송을 위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부분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계획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침언할 것은 없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지역채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같이 제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미래부에서 변경허가할 때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건까지 모두 붙인 경우는 미래부가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일단 의견이 통보되면 미래부가 판단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방통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영해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 최성준 위원

- 변경허가할 때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첨부 의견으로 나오게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지금 제가 들은 것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변경허가에 대한 동의를 할 때 방통위가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검토하고 또 어떤 계획 하에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2014-19-06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 규정에 따라 '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과 주요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방송시장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고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경쟁상황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토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조사·연구, 통계분석 등의 세부사항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회계 자료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방송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중점 평가를 VOD 시장현황과 MSP 관련 분야 이슈로 선정해서 별도로 분석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절차입니다. 먼저 단위시장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수요 대체성과 공급대체성, 그리고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구조, 시장성과 및 사업자 행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구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측정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위시장별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선정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은 추진계획(안)에 따라서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통계분석 등 세부사항을 수행해야 하는데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까지 해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9월에 방송시장 확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안)를 보고 드린 후에 내년 3월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쟁상황이 어떤가를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각 방송분야 별로 경쟁의 정도나 방송법령상의 위반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또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공표자료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대조해서 각 기업이나 아니면 방송시장 전체 규모에서 매출액 정도를 파악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분담을 결정할 때 그런 정책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라는 것이 한 2년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평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이렇게 전문 연구기관도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또 많은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OTT라고 하기도 하고 N스크린이라고 하고, 여기 VOD 이야기도 나왔지만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많이 인터넷이다 모바일이다 이런 것을 통해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지금 방송법상, IPTV법 포함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러한 방송사업자 내지는 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흡한 평가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대상으로 삼을 때도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이 시장을 같이 고려한 평가가 되어야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제도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의미 있는 실제 시장의 기술동향이나 시장동향과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시장지배력이 어떤 특정한 방송사업자로 지나치게 쏠린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또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를 활용해서 일종의 경쟁이 더 후퇴되고 있다면 그런 측면의 우려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실제로 이렇게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시장동향이 이렇다, 폭넓게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경쟁상황평가라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결과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우리의 시장, 당시 기능이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노력이 몹시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계획 자체는 적절한데 앞으로 실제 평가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결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14년도 중점 평가이슈>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시장에 지금 VOD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채널거래시장을 들여다보는,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차별적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고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작년도 분과 '12년도 분해서 2권이 나와서 국회에도 나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평가자료를 최근 업무에 구체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저희들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장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허가, 재승인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가 평가할 때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거의 충분히 따르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추가로 말씀 드리면 스마트 미디어에 관한 시장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금년도 별도 연구과제로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청점유율 관련해서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미디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디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주어진 방송시장 그 안에서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각 지상파면 지상파, SO, PP 이렇게 쪽 분야별로 이것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느냐만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송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서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미디어 시장 전체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방송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부분은 방송시장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물론 방송시장에 포커스를 두긴 하지만 미디어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포커스를 가지고서 방송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다 더 방송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방송시장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VOD 부분, 또 스마트 미디어 부분 이렇게 쭉 다시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부분, 또 그동안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은 시장의 측면에서 우리 방송시장이 현재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축소되어 가는 과정인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송시장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지금은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올해의 안전으로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방송시장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방송법이나 IPTV법상의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시장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측정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N스크린이나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포함시켜서 측정 평가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씀 과제가 나올 것 같고, 그것을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미디어다양성과도 관련이 깊은 연구조사일 텐데, 우리가 방송시장점유율이 있고 시청률이 있는데 그 시장점유율에서 광고 말고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장을 획정할 때 수신료도 포함되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포함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수신료가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부분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유료방송의 경우에 수신료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시청률조사 따로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수신료와 시청률이 비슷한 유사개념 아니겠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시청률도 조사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물론 따로 하겠지요?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시장 확정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 적용을 받는 것만 하면 너무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른 뉴미디어들 다 포함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요. 그 수많은 인터넷방송, 팟캐스트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느냐, 어느 정도 그것을 제외하고 하느냐, 적절한 선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전문가들 토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방송시장 확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시장 확정에서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또 종편은 종편대로,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대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점유율을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방송시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저희들이 시장 구분은 크게 4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유료방송시장, 그다음에 하나는 채널거래시장, 프로그램 거래시장, 광고시장 이렇게 4개의 큰 구분해서 일단 나눕니다. 종편 부분은 종편이 들어왔을 때 그 시장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어떻게 되나….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룹별로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미디어다양성 면에서 적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몇 차례 안 했지만 시장점유율 조사에서….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플레이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 자체는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경쟁상황은 진전되고 있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 자체도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른바 방송의 큰손들이 지배적사업자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신호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6페이지의 분석 및 평가에 보면 방송광고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이렇게 크게 4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구분이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 원래 거래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다, 종편이다, 보도PP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제외하고, PP는 별도라고 치고, 그러면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됩니까?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유료방송시장 SO, 케이블, IPTV 전반적으로 다 평가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결국 지상파나 보도PP나 종편이나 이것은….

○ 박동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종편은 PP이기 때문에 채널거래시장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부분은 광고시장에서, 저희들이 지상파는 직접적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시장에서 지상파를 분석하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번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논의는 해 보십시오. 이것이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시장 구분인지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아무튼 이것이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이 분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정해서 만든 것인데 보고 드린 바대로 9월 중에 저희들이 이 확정안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광고시장이라고 보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요 대체성 측면을 한 번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자꾸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성이나 경쟁상황이나 시장지배력을 따졌을 때 통계를 확보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한 시장만 가지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됐다, 경쟁이 덜 활성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되면 메이크 센스(make sense)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뉴미디어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것을 여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그 시장에서 예를 들면 VOD 시장이다, 뉴미디어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VOD 시장을 유료방송시장 안에서 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은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이미 두 차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올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년 2년의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참고해서 하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혹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과거의 1, 2년 전의 것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올해에는 평가 연구기관에서 다 반영해서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니 1,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추진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보고안건>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하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다 보고하셨으니까 다시 중복할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특별히 지금 지난번과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같은 경우 <제1안>은 역시 현행 징수율 0% 유지안이고, 다음 페이지 <제2안>은 최초 징수율 사례를 고려해서 1%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고시 개정의 두 번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분리 같은 내용이 담겨있고, 끝으로 오늘 의결이 되면 일단 이 부분이 절차를 거쳐 6월 하순 정도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고, 이와 별도로 방통위와 미래부가 합동반을 구성해서 면제감면 기준이나 징수율 기준을 보다 정치(精緻)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내용은 특별히 변함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한 것 이외에 더 추가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일부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유보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만 다른 큰 이슈도 많아서 국민 여론층이나 심사위에서 크게 중요한 피드백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전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송사들, PP도 케이블도 간접적으로 전파이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타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업자 공동체 분담금입니다. 돈을 벌어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내고, 수익이 없으면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고 돈을 벌었으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까? 방송사업자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분담금을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적자면 징수율을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분담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징수율 0%, 징수를 안한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들, 유의미한 징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의무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적자라는 이유로, 또는 그룹이 적자라는 이유로 면제하고 방송사들도 기획프로그램, 취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도 안내면서 방발기금은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공재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와서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적자를 이유로 해서, 또 처음 시작했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안 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출발할 때 1%라도 종편들에게 걷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종편 출범할 때부터 특혜를 비판, 지적해 왔습니다. 3대 특혜, 4대 특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큰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내봤자 1억원에서 5~6억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내고 국민 주문이라고 할까, 여론에 부응하는 것이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종편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들이 경영 여건이라고 할까, 적자폭에 맞게 징수율은 조정할망정 분담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직 우리가 <보고사항>으로 접수는 안 됐지만 기재부나 미래부와는 계속 이야기를 해 왔을 테고, 혹시 이런 관련된 부처로부터 이 건 가지고 실무적으로 구두상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부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들이 있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내용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으로 없었고, 저희는 하게 되면 빨리 해야 한다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가 많았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차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략히 제 의견을 오늘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을 가능한 한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같이 세어(share)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률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舊 방통위 때부터의 정책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편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정도 돼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법률부터 시행령, 고시내용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정책결정한 선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 법령 체계상 문제도 있어 보이고 미흡한 점도 있어 보이고, 정책방향을 이쯤에서 다시 리뷰를 해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에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래부의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까지의 행정선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자들, 만약에 결정여하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는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행정예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제1안>대로 0%로 금년의 경우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담금은 당연히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들로서 당연히 같이 분담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분담금과 관련된 여러 플랫폼 간의 징수율 문제를 놓고서 집행이 되어 왔던 관행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경우는 재원이 당연히 수신료가 근간이 되고 또 공영방송이 아닌 지상파는 광고가 재원이 되지요. 그리고 IPTV나 SO나 일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유료방송으로서, 시청자, 수신자들이 내는 요금으로서 그 재원의 상당 부분 주재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PP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편과 보도PP의 경우도 같은 유료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 IPTV나 SO나 위성방송이나 이런 방송과 궤를 맞춰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SO의 경우에는 그동안 8년간 징수를 하지 않았고, 위성방송도 6년간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PTV는 올해까지 포함해서 또 6년간 계속 징수하지 않고 있고, 지상파 DMB의 경우에도 지금 올해 포함해서 9년간 지금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체계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종편과 보도PP의 경우 올해 누적적자가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별도로 이렇게 징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나 그동안에 쪽 같은 유료방송계에 있었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도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도 올해는 징수율을 <제1안>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세 분 의견을 다 들었고, 저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업자들과의 형평의 문제, 그다음에 종전부터 해왔던 전례, 그리고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로 또 이런 징수방안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3기 방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절차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향후 계획에 지금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미래부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인지 언제까지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없고 7월부터 계속, 내년까

지는 아니겠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시행령과 고시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부처 간에 분담금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책결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반영할 것, 고시에 반영할 것 이렇게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반 운영을 단시간 내 해서, 그러니까 법률개정이 만약에 없다면 시행령과 고시에 반영해서 개정까지 끝내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또 분담금 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시간에 쫓겨서, 또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예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는데 이 전담반 운영을 최단시간 내에 해서,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은 해야지요. 하여튼 금년 제가 생각하기에 가을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돼서 정책이 결정되고 고시까지 다 개정이 돼서 딱 발표가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반의 결론은 가능하면 올해 가을 까지 나오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약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생기면 시행령 개정하는 데는 몇 달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하고….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법제처 심사….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요? 가을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연말이나 연초에 시행령 개정작업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연말까지 시행령 고시까지 다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말까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 이기주 상임위원

- 목표를 강력하게 국회에 자꾸….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향후 연구에 관한 부분이고, 일단 2013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징수율 결정을 <보고사항>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정해야지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다음에 분담금 부분이 기본적으로 규개위 심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대강의 의사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2안>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께서는 <제1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올해까지는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제1안>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제2안>이 한 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 중에 <제1안>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별표1)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별표2)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5월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2년 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5월 15일까지 미디어렙사 영업보고서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지원 대상 사업자별 지원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이번의 경우는 '09년~'13년까지입니다. 5년간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이 12.4213%입니다. 그리고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8.507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 사업자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사업자와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5월 24일~6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중순에 위원회 의결, 그리고 고시 시행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고시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을 몇 차례 해서 운영한 것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이것이 세 번째가 됩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12년에 제정을 했고 작년에 한 번 개정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서 반영하려는 것이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그리고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사업자, 그리고 그 사업자별 최소 지원규모 이렇게 어떻게 보면 3가지를 정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전년도 고시내용과 이번에 오늘 안건으로 올린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결합판매된 평균비율과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자별 지원규모를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현업 실적을 토대로 계산해서 다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이번에 다시 바뀌어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법률을 보니까 법률에 비율 산정하는, 지원규모 산정하는 식이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고,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는 각 대상사업자별로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매출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계산해 내는 작업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실제로 고시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산식에다가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결합판매사업자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지원대상 사업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이야기는 여기의 논점이 아니고 종전과 똑같이 해 놓고 지원규모만 계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3년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고시개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달리 정책결정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도운명을 한 3년째 했다면 이쯤에서는 한 번 다시 지원대상사업자나 법률에 정한 이 방정식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시 부칙에 여기에 정한 이 내용은 몇 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시사항입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폭넓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연구결과를 언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조금하게 할 일은 아닌데 이쯤에서 한 번 연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결합판매비율이 그동안 각사별로 비율이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각 개별사별로 '13년도 기준은 '08년~'12년까지 직전 5개년도이고, 올해는 '09년~'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08년 부분이 빠져 나가고 '13년 부분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08년도 결합비율이 낮았던 개별사업자의 경우에 '08년이 빠지고 '13년 평균치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업자가 있고 '08년도의 결합비율이 높았던 사업자는 '08년이 빠져 나가고 '13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어든 사업자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결합판매비율이 올라갔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결합판매비율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수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직전 5개년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태로 Key사, KBS, MBC, SBS의 전체 광고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결합판매는 일정 부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결합판매비율이 조금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9년 높은 것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직전 5개년도 평균을 내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에 작성이 다 반영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 측면을 한 번, 그 트렌드(trend)가,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까? 4년….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올해는 두 번째 개정인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전체적으로는 결합판매비율이 조금 올라갔었고, 올해도 조금 올라간 추세에 있는데 그런 추세도 저희들이 보면서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깊이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속 계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단위로 한 번쯤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퍼센티지 문제를 가지고 호스트(host)사와 결합판매 대상사와의 사이에 어떤 갈등은 없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금까지는 고시에서 공표된 비율을 미디어업사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나 갈등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미디어업사가 어느 중소방송사를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업사들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고, 그리고 중소방송사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접수되고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데 대해서도 의견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저는 일단 이번 원안은 이렇게 접수하되 뭔가 이 부분의 제도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단계를 한 번쯤 매 5년마다 종합점검을 해 보든지 해서 그 트렌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기계적인 산술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5년간의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 급격한 인상 어떻게 보면 정책적 지원 필요에 따른 비율 인상,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장에 맡겨서 비율이 그대로 나온 결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어느 방송사에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하다', '적자폭이 아주 크다', '위험하다', '그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라' 하면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구책으로 증자를 하든가 뛰어서 광고를 많이 수주하든가 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 결합판매비율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면 자구노력

하는 만큼 매칭펀드 방식으로라도 결합판매비율을 높여줘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 즉 중소방송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 부분을 결합판매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그런 제도연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정도에 그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연구 진행 중이고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결합판매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반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정책기관으로서 정책적인 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고치라고 주문을 했으면 자구노력은 안 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지원을 해 주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연구 잘 진행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고시는 시한이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올해 이 부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올해라는 것은 언제 입니까? 예를 들면 11월에 적용해서...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미디어웹사 2개 사업자가 40개사의 결합판매비율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시비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작년도 기준에서 예측을 하고 1월, 2월, 3월, 4월 결합판매비율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빨리 이 부분의 비율을 확정시켜 주어야지 웹사에서 결합판매비율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웹사 두 군데에 의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해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확정지어 주는 것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가장 적절한 고시를 정해 주는 것이 연중에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영업보고서 검증을 하고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보고서 검증하는 것이 보통 3월 말~4월 초에 영업보고서 검증이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다 나와야 하고 그 부분에서 영업보고서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린 내용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을, 바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행정예고가 됐을 때 미디어랩별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의결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업보고서 검증은 회계법인에서 하면 끝입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사무처에서 영업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결과를 검토나 리뷰하는 인력이나 절차는 없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고, 6월 초에 올해 영업보고서 검증했을 때 나왔던 각종 랩사가 제출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 또 필요 없는 서식을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검증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다시 종합을 회계법인과….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고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 방송광고정책과에서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영업보고서 검증을 회계법인 어디와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파이널(final)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6월 중순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정(안)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을 검토하는 직원 중에 회계사가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 과에는 회계사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우리 위원회 내에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기반국에는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시 제정 이후에 작년, 금년 한 대로 한다면 이 고시내용의 키(Key)는 영업보고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을 민간 회계법인에 의견이 적절하다면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까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크로스체크(cross-check) 내지는 리뷰(review)를 방통위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원대상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보고서를 일단 회계법인이 검토한 것을 리뷰라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며칠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회계법인에서 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몇 주 동안 작업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에는 5월 중간보고를 했고, 지금 6월 말에 다시 최종 보고, 다시 회계사와 저희들이 다시 마지막 최종 결과물에 대해 방송광고정책과에서 다시 검증을 합니다. 실제 회계법인에서 검증할 때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광고정책과에서 검증을 직접 한다는 말씀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법인 랩사에 대해서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회계법인이 한 것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을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고 회계법인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회계법인에서 최종적으로 낸 보고서는 저희에게 리뷰를 한다는 말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중간과 최종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인력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점검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 많으면 아주 세밀하게 사실상 회계법인이 하는 만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지금 여쭙 보는 것이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인력으로 그것을 꼼꼼히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

- 그것을 지금 보기에는 소수점 넷째까지 가서 큰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금액으로 가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계법인이 잘하리라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리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방통위의 내부 회계사 인력이 없다면 저희도 자문해 주는 회계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회계사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통신 영업보고서 검증을 예전에는 KISDI가 많이 하고 이용자정책국에 회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팀, 그러니까 방송기반국의 전문인력 확보는 확보대로 추진하고 기존에 타 실·국에 있는 인력이나 KISDI의 인력들을 활용하시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책연구의 대상에는 우선 저것도 들어갑니까? 결합판매사업자별로 지원대상 사업자를 어떻게 안분할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결합판매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지원비율 계산하는 수식의 적정성, 그다음에 또 가중치가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가중치의 적정성,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가중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11월쯤 되어야 나오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작업 진행 중이고 11월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번에 이것을 6월에 의결할 때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또 역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올해 고시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접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8. 현안사항

가.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현안사항 가>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은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님 직접 제안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와 연관된 최근의 KBS 사태, 주요경과를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안이유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날 오후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오후 저녁에 세월호 피해유가족들이 KBS를 항의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재난방송의 편향보도와 두 번째는 보도국장의 실언인지, 망언인지로 촉발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장 사퇴와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밤을 새우고 그다음 날 5월 9일 오전에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정무수석을 면담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켜보다가 5월 9일 오전에 제16차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긴급사안 발언으로 거론했고, KBS의 재난방송 편향 문제가 토의된 바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KBS의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보직사퇴와 그동안에 보도 공정성 침해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저는 내부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선언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KBS 사장이 청와대로 가서 세월호 피해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15일에도 저는 제18차 회의에서 다시 긴급사안 발언으로 KBS 사태에 대한 방통위원회의 조치 필요성을 제의했습니다. 그날 밤에 KBS는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사과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다음 날 KBS 보도본부의 부장단과 간부급 거의 전원이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256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언론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19일부터 KBS 기자회견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그날부터 9시 뉴스가 방송과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아침방송, 아침뉴스가 결방되는 등 정규 프로그램 방송에 많은 차질과 과행을 빚고 있습니다. 9시 뉴스 앵커는 방송사의 스튜디오를 떠나서 거리에서 지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기관

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유일한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KBS가 지금 평기자와 PD뿐만 아니라 보도와 제작에 책임 있는 간부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방송과행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난방송 상황에서 주관방송사인 KBS가 정부와 피해유족 사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되고 부정확한, 어떻게 보면 왜곡된 보도를 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사를 보는 보도책임자의 부적절한 시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언이 피해유족들의 누적된 불만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도책임자는 그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독립적인 보도, 거기에서 빚은 게 아니다, 많은 간섭과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 보도책임자는 KBS 사장이 청와대 당국자의 연락에 따라서 보도 간섭을 수차례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방송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제1항과 제105조제1항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피해유족들의 격렬한 항의가 근거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가 KBS의 방송과행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법 규정과 정당한 직무를 근거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책무소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정책국을 비롯해서 상임위원 회의가 직무유기 아니냐, 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KBS 제작국 간부들과 청와대 당국자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조사는 아닙니다. 방송정책기관으로서 자료조사이고 진상파악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KBS의 경영기관인 이사회에 대해서 국가기간방송과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도록 책무와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나 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들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아닙니다만 그때 이사들에게 공공·공적책무를 위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편향보도 논란과 피해유족들의 심각한 항의사태,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자료화해서 2017년 12월로 예정된 KBS 재허가 심사 때 엄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고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BS 구성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내부에서 토론을 벌이고 의견수렴해서 빨리 이 방송과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이 과행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주문입니다. 이것을 재허가 심사가 진행될 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그때 보자는 것은 정책기관으로서 적절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법원이 범법행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수사하고 벌를 주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심각한 사태의 불행, 국민 불편을 예방하는 의무를 가진 정책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KBS는 다 아시다시피 준조세로 불리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그것을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저녁 9시 뉴스시간의 축소, 아침뉴스 결방, 중요 인기프로그램의 과행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경영기관인 이사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그대로 인상해 줘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까?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 수정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KBS 사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 피해유족들의 심각한 항의사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정책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의결안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토의, 간담회, 티타임하는 토의에서 <의결안건> 상정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기타안건>처럼 맨 뒤에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적절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KBS나 또 세월호 피해유족들에게 알려져서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KBS 사태를 빨리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을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이 하나의 안건이고, 그다음에 KBS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고발을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안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신료에 관련해서 이미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그 이후의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자, 그렇게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니, 지금 2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회에 대해서 KBS의 방송과행을 막도록...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결의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결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재허가 심사 때 엄정하게 비중 높게 반영하겠다, 비중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예고하는 것이 KBS 구성원들에게 심각성을 재인식시키고 빨리 정상화를 이루도록 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내용에 관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김재홍 위원님이 이렇게 서면으로 안건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내지는 긴급사안으로 발제를 해 주셔서 토론이 나뉘었지만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은 정리를 해서 또 법적인 근거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 티타임 때도 그런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작성해 주셔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사무처에도 부탁을 하고 저 스스

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위원님이 발제하신 내용과 제 의견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발표하신 것과 자료 주신 것과 조금은 순서나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로 주신 안건의 5페이지에 보면 저도 KBS의 지금과 같은 상황,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임위원 결의문 채택, 내용은 뒤에 있는 <나>, <다>, <라>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방통위 결의문 형태로 채택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방통위가 다른 각 사회단체나 협회나 내지는 정치권과는 달리 저희는 행정부의 일원이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의결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나 방통위 설치법으로 보나. 그래서 이러한 결의문 형태로 그 내용의 적절여부는 둘째 치고, 이런 결의문 형태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송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 관련해서 방송법 제99조제1항, 그리고 방송법 제4조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99조제1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그런데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저는 지금의 KBS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중단되고 결방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조사 및 고발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께서 아까 발제를 하실 때 자료조사나 진상파악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첫째 강제조사, 다른 여러 법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사실내용을 관계자들을 통해 파악하려면 그것은 개별 조항별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그런 법적근거가 없고 그것보다는 강제성 정도가 덜한 자료조사, 진상파악 이런 경우도 저희가 KBS나 이런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적법하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허가나 방송평가할 때 반영하는 문제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중에 재허가나 방송평가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료 관련해서 수정의견서 내는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제2기 방통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절차상 기대가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출석하게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전부가 나가서 의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토론을 통해서 수정된 의견을 내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절차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방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태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서, 특히 방송사에서 그것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용도 봤는데 현재 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재난방송 제도에 대해서 법률부터 시행령, 고시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바로 종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서 이런 재난방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먼저 김재홍 위원님께서 최근에 수일 동안 KBS 상황에 대해서 많은 준비해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KBS의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BS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방통위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일단 차분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우리가 중앙정부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준비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KBS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아주 신중히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제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입니다. 중앙행정기구라고 하면 필요한 우리의 행위는 법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지,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이사회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KBS 자체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회가 이미 소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이사회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자칫하면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압력으로 비치기 쉽다, KBS 경영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권능에 전적으로 맡겨 두고 방통위는 그 KBS 이사회의 권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인상(안) 수정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사장이 결정해서 KBS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받고 그리고 방통위는 부수적인 의견을 달아서 국회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60일 간에 걸친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실무진들의 검토의견도 수정제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하면 정치적 행위로 비치기 쉽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중앙행정기구이고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부 위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제안으로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섭과 통제라는 자칫하면 우리가 독소조항을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로서는 어떤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나가는 행위인지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비유해서 말씀 드리자면 어떤 병실에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방통위원회의 역할은 그 병실에 환자가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직접 어떤 마스크를 가지고 환자 치유를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과거 어떤 언론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방통위원회도 분명히 중앙정부기관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권력은 언론에 대해서 항상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KBS의 상황,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사회도 소집이 되고 사장은 사장대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협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서로의 소통과 대화와 자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원회는 KBS의 상황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 상황이 정말 이 기회가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보다 더 확고히 지켜 주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해서 방통위원회가 조금 더 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김재홍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까요?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송편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저도 누구 못지않은 언론자유와 신봉자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법에 따라서 창달되는 것입니다. 뒤에 분명히 법적근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방송정책기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제99조제1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방송중단은 아니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도 블랙아웃은 없습니다. 방송파행이 있을 뿐입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 시청자에 현저히 저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요 뉴스 정보원으로서 KBS 9시 뉴스를 보는 애·시청자입니다. 지금 며칠간 계속 메인 주요 9시 뉴스가 축소되고 파행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방송은, 출근시간에 준비하면서 보는 아침뉴스는 결방입니다. 이것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KBS의 재허가 심사 때 제출한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와 허가조건입니다. 이런 이런 정상적인 질 높은 방송을 내보내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청자 이익에 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송법 제44조제1항은 KBS가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선언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미비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행령에

있습니다만 KBS는 지금 이 범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KBS 내부 고위간부의, 보도책임자의 공개발언입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양심선언입니다. 이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를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 편성권 내의 문제이다, 보도내용에 대해서 간섭,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KBS에 대해서, KBS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방송파행을 빚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부 보도내용, 제작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파행사태를 빨리 정상화해라, 그래서 국민 시청자의 이익에 부응해라, 그 부분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부당한 규제의 간섭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난방송, 특히 초기에 KBS가 보인 편향된 방송, 바로 그 세월호 피해유족들을 격분시킨 내용,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정부 안전 관련 부처, 특히 요사이 아주 많이 비판을 받는 해경, 구조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구조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마치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되고 있는 양 보도한 것들이 누적되어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제4조제2항과 105조제1항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 불법사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행조치를 하거나 사직당국에 자료를 넘겨주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신료 조정(안) 수정의견서 제출 문제인데, 국회에 논의될 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만 정책기관으로서 더 악화되고 심각한 사태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청자 이익이 장기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재허가 심사 때 지금의 이 사태 시청자뿐만, 피해유족들의 격렬한 항의,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엄정하게 반영하겠다고 예고해 놓으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KBS 구성원들에게 '아, 이것 빨리 정리해야겠구나, 더 이상 방송파행이 되면 우리 함께 곤란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면 된다, 재허가 심사 때, 또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때 그때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 참석해서 의견을 분명히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답변할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해서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신료 인상의 부대의견에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서를 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012년 MBC 노조파업 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낸 전례도 있습니다. 그때 MBC 파업은 대체로 노조원들, 평기자, 평PD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KBS처럼 고위간부, 또 보도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부장단들, 이런 간부진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해방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직무유기, 책무소홀에 이른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하는데 좀 과한 것은 수정하고 침묵하더라도 KBS 사태와 관련된, 재난방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다시 또 반론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오늘 세 번째이고, 그리고 논의를 할수록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의견을 쉽사리 좁히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과거에 방통위에 있을 때도 <현안사항>이라고 하면서 안건으로 논의한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제안을 해 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KBS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오늘 결의(안)을 어떻게 하자, 내지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름 부위원장님과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계류시키고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 다시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는 조금 전에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의견은 이 부분에 관해서 방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제 의견은 확실합니다. 단지 지금 김재홍 위원이 낸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 결의문 자체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결의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주, 마치 유인물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식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문안, 우리 회의에 공식적인 회의에 나오는 자료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되고,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의견이 합일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결의문'이라고 해서 김재홍 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 '결의문'으로 표시하든지 또 맨 마지막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류양식 부분도 처음부터 제대로 합의를 본 사항을 기록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전혀 아닌데, 이것은 안건인데...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홍 상임위원**

-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안건인데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안하셔서 당연히 김재홍 위원께서는 이것이 논의가 돼서 저희의 의견이 모아지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결의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결의문으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 김재홍 상임위원

- 물론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제안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이것은 제안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으로 내놓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아니, 그 부분은 더 논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그것이 지금...

○ 김재홍 상임위원

- 안전 문안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는...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서 합의 안 되고 폐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결되는 안전인데 그것을...

○ 허원제 부위원장

- 처음에는 여기에 이름까지도 다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안전이기 때문에 합의되면 이름을 넣고, 합의 안 되면 안 넣는 것이고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거나 이름은 삭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김재홍 위원 개인의 명의로도 결의문을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우려를 미리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보고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서에 붙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논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도록 하고, 절차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5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 KBS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KBS 이사회 안건 중의 하나가 사장 해임 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이틀 뒤에 표결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이 금요일이고 KBS 사태가 앞으로 유동적으로 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그대로 계류한 상태로 상황을 봐서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하자는...

○ 이기주 상임위원

- 논의하든지 필요성이 없어지면 안 하든지...

○ 최성준 위원장

- 폐기를 하든지...

○ 이기주 상임위원

- 또 어떤 찬반을 분명히 결론을 내든지 그것은 상황을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상황을 보자는 의견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최소한의 타협이라고 할까, 현실적인 고려로 이기주 위원님의 제안을 제가 받겠습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결, 폐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론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부위원장님 의견 괜찮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논의를 마치고, 향후 KBS 상황에 따라서 추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일단 다 마쳤습니다. 그 밖에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요일 오전 10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10분 폐회 】